

우수선수 선발 및 지원규정

제정 2021.09.24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우수선수의 선발에 따른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원) 우수선수 지원은 우리 회 예산에 책정된 금액과 특별협조금 및 후원금이 있을 시 이를 재원으로 한다.

제3조(대상자 추천 및 결정) ① 우수선수는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우리 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한다. 단, 지원 인원은 우리 회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.

② 중도 지원 요청자 및 지원자 변경은 사무처장이 결정한다.

제4조(심사위원회) 심사위원회는 우리 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맡는다.

제5조(추천대상) 우수선수는 우리 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해야하며 추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국가대표(주니어 국가대표 포함) 선수
2.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
3.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
4. 타 시·도 거주자로서 전국체전에 우리 도 출전을 서약한 선수
5. 도내 및 타 시·도 대학선수로 우리 도 대표 출전이 확정된 선수

제6조(구비서류) ① 우수선수 지원대상자 추천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- 신청서 1부.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재학(직)증명서 1부.
- 경기실적증명서 1부.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.

② 최종 선발된 선수는 서약서, 계좌사본 등 우리 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.

제7조(지원기준 및 지원금액)

① 우수선수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.

등급	지원기준	월 지원액(천원)
A	○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 입상한 자 ○ 현, 국가대표(주니어 대표 포함)	1,000이하
B	○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2~3위 입상한 자	600이하
C	○ 최근 2년간 전국체전 8강 진출한 자 ○ 최근 2년간 각종 전국대회에서 1위한 자	300이하
D	○ 최근 2년간 각종 전국대회에서 2~3위 입상한 자	200이하

②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별도로 대상자 및 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금 지급) ① 지원금 지급기간은 10개월(1월~10월)간으로 한다.

② 매월 25일에 지급하며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9조(지원 중단 및 환수) 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중단을 할 수 있다.

1. 당해 연도 전국체전 대표선발전에서 선발되지 못한 자
2. 정당한 사유로 전국체전에 불참하게 되는 자(국가대표로 국제대회 참가, 부상 등)
3.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의할 때

②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.

1. 지원 중 타 시·도로 진출이 확정된 자
2. 본도체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3.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 환수가 필요하다고 결의할 때

제10조(선수관리) 최종 선발된 선수는 매월 훈련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종목단체가 수합하여 익월 초까지 우리 회로 제출하여야한다. 우리회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.

부 칙 (2021.09.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.